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3~26

제출년월일	2003. 5.
제 출 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개정(2003. 4. 1)에 따라

○ 간접흡연의 폐혜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부과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조정함(안 별표1)

-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

▶ 10만원~50만원까지 ⇒ 30만원~300만원까지

○ 과태료 부과대상 중 삭제함.

-보건교육 미실시(안 제3호)

-19세 미만자에게 담배판매(안 제4호)

○ 과태료부과대상 중 신설함.

-담배제조업자의 자료 미제출(안 제5호)

-흡연구역 시설기준 위반(안 제6호)

-담배제조업의 미보고 및 허위보고(안 제7호)

□ 개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8조, 제34조)

○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5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법령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제1항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50	100	300
	2.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50	100	300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	50	100	300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제2항	4. 법 제9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0	60	200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	60	2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 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 9. 1일부터 시행한다.